

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
	기관명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	업무범위			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1부 4. 설치검사·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행정안전부 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)